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5. 4.

다. 상 정 일 자 : 2004. 5. 4.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농산과장 양 정 열

나. 제안사유

-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제1항 및 제3항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을 추가
- 지원대상 (안 제4조) :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을 추가 급식비를 지원
- 지원신청 (안 제6조) : 유치원과 여성부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을 추가
- 지원대상자의 의무 (안 제2조) : 제1항 및 제3항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을 추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초중고 재학생에 한하여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지원토록 2003년 11월 11일 화순군 조례 제1791호로 의원발의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병설유치원과 여성부 소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 및 놀이방 시설에도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아동”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 같이 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 중 “초·중·고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용 정산서를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①“학교급식”이라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②(생략)</p> <p>③지원대상자라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를 말한다.</p> <p>④(생략)</p>	<p>제2조(정의)① ----- ----- -----</p> <p>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 아동---</p> <p>②(현행과 같음)</p> <p>③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화순군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u>초·중·고등학교</u>로 한다.</p>	<p>제4조(지원대상) ----- ----- -----</p> <p>--<u>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u>으로 한다.</p>
<p>제5조(지원방법)①~②(생략)</p> <p>③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지원한다.</p> <p>④(생략)</p>	<p>제5조(지원방법)①~②(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④(현행 제4조와 같음)</p>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화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생략)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용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화순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용 정산서를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